

인권 정책

제1조 (목적)

셀트리온은 인권을 최우선의 경영이념으로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세계 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UN 아동 권리협약(CRC,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of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에서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셀트리온 본사, 국내외 법인 및 자회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셀트리온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등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도 본 정책의 준수를 권장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개인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민족, 성 정체성,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차별행위에는 채용, 승진, 평가 및 보상, 퇴직 및 해고, 교육의 기회 등이 포함된다.

②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차별 금지 원칙에 기반하여 임직원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한다. 또한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지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행위에는 각종 협박, 따돌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피해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 사실관계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며, 이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포함한다. 12

④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방지

근로를 목적으로 한 협박, 감금, 폭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에 따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⑤ 강제노동 금지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등 근로자 개인문서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⑥ 아동노동 금지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신규 입사자의 연령검사를 통해 입사 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동 노동 사실이 발견될 시 즉각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

⑦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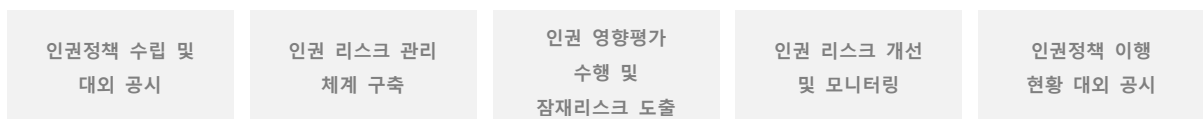
⑧ 동등급여 보장

고용 및 임금을 결정하는 평가 등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운영 체계)

①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셀트리온은 본 정책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행하고, 필요한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또한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회적 변화와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② 고충처리 프로세스

1. 셀트리온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접수할 수 있는 다음의 채널을 운영한다.

- 가. 보직자를 통한 의견접수
- 나. 익명 소통 채널 운영(通通Talk)
- 다. 온라인접수(Tong@celltrion.com)
- 라. 조직문화실 고충 상담 채널 운영(ER팀)
- 마. 고충처리위원 제도 운영

2. 인권침해 제보 접수 시, 내용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등에 보고되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다. 모든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과 보복행위도 금지한다. 제보 사항 중 중대한 위법 및 부당행위가 확인될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